



#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07
제정일자	2007.06.29
개정일자	2018.01.29
관리부서	교학처

1/3

##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‘본 대학’ 이라 한다)학칙 제35조 교육 과정에 의거 학칙 제2조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운영 방안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 2 조 (교육과정의 목표)**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의 국가목표를 지향한다.

1. 전문대학 고유의 설립목적인 산업사회의 전문 직업인 육성 배출
2. 국·공립기관 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학문 수요의 충당
3. 산업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1인 1기, 다 자격취득인의 양성과 교과 편성
4. 신학문의 연구 및 그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로 본 대학의 특화 발전책 추진

**제 3 조 (교과목의 현실화)** 본 대학의 전문교과로 구성하고 각각 필수와 선택 과목을 둘 수 있으며,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과목을 편성한다.

1. 교과목의 배정은 학기별, 학년별 수준에 의한 학문체계를 단계화
2. 각 학과별 학습내용과 실습수준의 심화과정은 개론, 각론, 전공분야로 순차화
3. 각종 국가기술고시에 대한 자격별 시험과목을 교과목으로 현실화
4. 국·공립기관 및 산업체의 채용시험과목과 현장적응 공동과목은 교양 과정화로 편성 할 수 있다.

**제 4 조 (교과배정과 학점단위)** 학점배정은 과목당 이론 1시간을 1학점으로 하고, 실험·실습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. 단, 강사료 지급은 학점으로 한다.(개정 2018.01.29)



#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07	2/3
제정일자	2007.06.29	
개정일자	2018.01.29	
관리부서	교학처	

## 제2장 교육과정 운영위원회

**제 5 조 (설치)** 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**제 6 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학과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(개정 2016.12.19.)

② 교양·교직과 위원은 필요시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3.07.29, 2016.12.19)

**제 7 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목표 설정과 교육방침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개선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신학문에 대한 교과과정의 새로운 개발에 관한 사항
4. 신 교과과정에 따른 대치과목에 관한 사항
5. 교재개발 및 그 편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(개정 2013.07.29.)

**제 8 조 (회의)** 위원회는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3.07.29.)

**제 9 조 (심의 의결사항의 처리)**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결과를 회의록 또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3.07.29.)

## 부 칙

**제 1 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07	3/3
제정일자	2007.06.29	
개정일자	2018.01.29	
관리부서	교학처	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